

연구비 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명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연구비 사용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비”는 교직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출하는 모든 연구비를 말한다.
2. “교내연구비”는 우리 대학교 교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비예산으로 지급되는 연구비를 말한다.
3. 삭제
4.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관리부서) 관리부서라 함은 교내·외 연구비 관리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산학연구처(산학협력단)를 말한다.

제2장 교내연구비 관리

제5조(연구비 지급대상) ① 교내연구비 지급대상은 우리 대학교에 재직중인 전임교원으로 한다. 단, 과제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 중에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할 수 있다.

② 교내연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교원은 매년 공고되는 신청안내에 따라 소정의 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비 수혜자 선정 및 지급) 연구비 수혜자 선정, 지급금액, 지급시기 등은 총장이 정한다.

제7조(연구비 집행 및 변경) ① 연구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양식으로 변경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연구결과보고 및 연구실적 제출) ① 연구실적물 및 연구결과보고서는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산학연구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과물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연구실적의 인정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4-1-2 연구비 관리 규정

③ 연구수행 기간 중 휴직하는 경우 휴직 기간만큼 연구실적물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드시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비 지급중지, 회수 및 제한) ① 연구비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결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산학연구처장은 지급된 연구비를 회수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단, 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회수와 관련하여 중대한 사안이거나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특수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1. 연구비의 지급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2. 연구비의 지급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연구보고 제출기일의 무단지연, 연구내용의 임의변경 등 「연구비 관리규정」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본 대학교 교원신분을 상실한 경우

② 단, 연구책임자의 사망으로 연구비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연구비 회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9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8조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유 결정일로부터 향후 1년간 교내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연구인센티브·창작활동 지원금) ① 학술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원에게 연구인센티브·창작활동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연구인센티브·창작활동 지원금 신청대상은 우리 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으로 한다.

② 연구인센티브·창작활동 지원금 신청교원은 매년 공고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소정의 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급금액, 인정율 등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교외연구비 관리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연구비 관리) 교외연구비 관리는 상명대학교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운영 세부지침에 따른다.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4장 간접연구경비 관리

제18조삭제

제19조삭제

제5장 기 타

제20조삭제

제21조삭제

제22조삭제

제23조삭제

제23조의2(협동연구) ① 본 대학교는 연구개발능력을 향상시키고, 과학기술의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학, 기업, 연구소 및 외국 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에 적극 참여한다.

② 협동연구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운영세칙)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4-1-2 연구비 관리 규정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위 규정은 202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06월 00일부터 시행한다.